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000호

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공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602호, 2022.5.10)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(정정) 입법예고

1. 정정 사유 및 내용

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함.

2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광역권*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,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・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토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29호, 2022. 2. 3. 공포, 8. 4. 시행)됨에 따라,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